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배수영 교수 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중학생의 음악 표절에 관한 인식조사

2024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음악교육전공
유은주

중학생의 음악 표절에 관한 인식조사

배수영 교수 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3년 11월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음악교육전공

유은주

인 준 서

유은주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2023년 11월

심사위원장 _____ 임 인 경 _____ (서명 또는



심 사 위 원 _____ 배 수 영 _____ (서명 또는



심 사 위 원 _____ 김 은 주 _____ (서명 또는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논문개요

본 연구는 중학생의 음악 저작권에 관한 인식과 표절 악곡을 판단하는 기준을 조사하였다. 이를 위하여 부천시 소재 중학교에 재학 중인 2학년 남학생 107명, 여학생 87명으로 총 19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 중 불성실 응답 설문지 22개를 제외하여 총 172부를 본 연구의 최종 자료로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음악 저작권 수업은 학교 정규 수업 시간을 통해 잘 이뤄지고 있었다. 그러나 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음악 저작권에 관한 지식과 태도를 조사한 결과, 음악저작물 성립요건과 음악저작물의 공정이용에 관한 세부적인 지식이 상대적으로 부족했기 때문에 음악 저작권 교육에 있어서 다양한 부분들을 간과하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교육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학생들은 저작물의 보호가 궁극적으로 소비자인 자신들에게 이익됨을 인지하지 못하였다. 학생들은 저작물을 합법적으로 구매하는 것이 더 많은 창작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생각하였는데, 이는 저작물을 구매하여 이용하는 것이 저작자의 창작 의욕을 장려하고 창작활동을 촉진하여 저작물 시장 활성화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사료 된다. 따라서 저작물의 보호가 소비자에게 질적으로 더 높은 수준의 문화 콘텐츠를 누리게 한다는 것을 학생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저작권보호에 대한 인식개선이 필요하다.

셋째, 표절에 대한 명확한 기준 확립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은 악곡의 표절 여부를 판단할 때 같은 마디 수를 표절했다 하더라도 차용되는 부분과 위치하는 곳에 따라 표절 인식 및 판단을 다르게 하였다. 이는 청중테스트로 표절을 판단하는 것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낸다고 볼 수 있

다. 우리나라는 음악 표절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법원은 때에 따라 그 진위를 판단하기 위해 청중테스트를 진행하는데, 청중테스트의 신뢰성에 대한 재평가를 요구하며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목 차

논문개요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의 문제	2
3. 연구의 제한점	3
II. 이론적 배경	4
1. 저작권법	4
2. 표절	6
3. 저작권 교육	10
III. 연구 방법	15
1. 연구 대상	15
2. 연구 도구	15
3. 연구 절차	17
4. 분석 방법	18

IV. 연구 결과	19
1. 음악 저작권 수업 경험 여부 조사 결과	19
2. 음악 저작권에 관한 인식조사 결과	20
3. 표절 인식조사 결과	24
V. 논의	28
VI. 결론 및 제언	33
참고문헌	35
ABSTRACT	37
부 록	39

표 목 차

<표 II-1> 2022 개정 중학교 음악과 교육과정에 제시된 저작권 관련 내용	11
<표 III-1> 설문지의 구성	17
<표 III-2 > 연구 절차의 내용 및 기간	18
<표 IV-1> 음악 저작권 수업 경험 여부	19
<표 IV-2> 음악 저작권 수업을 받은 시기 및 방법 (중복가능)	19
<표 IV-3> 음악 표절 및 음악 저작권 침해 인지 여부	20
<표 IV-4> 음악 저작권 침해 경우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조사	21
<표 IV-5> 음악 저작권에 대한 학생들의 태도 조사	23
<표 IV-6> 가락 1마디 표절유형	24
<표 IV-7> 가락 2마디 표절유형	25
<표 IV-8> 가락 4마디 표절유형	26
<표 IV-9> 화성 표절유형	26
<표 IV-10> 리듬 표절유형	27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최근 1인 미디어 시대가 열리면서 학생들은 누구나 다양한 SNS(Social Network Service)나 온라인플랫폼을 통해 콘텐츠를 만들고 공유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저작권에 관한 이해가 없다면 무분별한 저작권 침해가 일어날 수 있다. 저작권 침해 문제에는 불법복제물의 이용과 표절 등이 있는데, 2023 저작권보호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온라인 불법복제물 이용의 경우 그 이용량이 전년도 대비 15.7% 증가하였으며 음악, 영화, 방송, 출판, 게임, 웹툰 등의 6개 항목 중에서 음악 분야의 불법복제물 이용량이 전체의 65.5%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박정렬, 2023). 이에 따라 교육부는 교육과정 개정을 통해 각 교과목에 맞는 저작권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구성하고, 한국저작권 위원회는 찾아가는 저작권 교육, 저작권 체험 교실 등을 운영하였으며 한국저작권보호원은 저작권 침해의 위험성을 알리고자 영상공모전을 개최하는 등 각 기관에서 저작권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편, 표절로 인한 음악 저작권 침해 사례는 저작권분쟁사례집이 출판될 정도로 그 수가 증가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법적으로 표절이 인정된 판례가 극히 드물고, 이에 대한 객관적으로 판단을 할 수 있는 기관이나 기준 또한 마련되어 있지 않다(최혜경, 2022). 그 결과 표절과 관련된 의혹이나 분쟁들이 일어났을 때 표절의 사실 여부를 가리기 위해 소송절차에 긴 시간이 소요되고, 공연자는 표절 여부에 관한 판단이 내려지기까지 대중들의 과도한 비난과 이미지 실추로 인한 활동 중단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실정이다. 또한

법원은 표절 악곡의 음악 저작권 침해 판단 시 청중테스트를 통해 해당 악곡이 실질적으로 유사한지를 판단하고자 하는데, 실질적으로 청중이 표절 악곡에 관련하여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대한 실증연구가 미비하고, 특히 대중음악의 가장 큰 소비층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연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음악 저작권에 관한 인식과 표절 악곡을 판단하는 기준을 조사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현재 청소년들의 음악 저작권 문제에 관한 지식 및 태도 수준을 파악하고, 이들이 음악 콘텐츠를 소비하는 과정에서 표절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 연구는 음악 산업과 교육 분야에 있어 저작권 인식을 강화하고 표절 문제에 대해 더욱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2. 연구 문제

본 연구는 중학생의 음악 저작권에 관한 인식과 표절 악곡에 대한 판단 기준을 조사하여 분석하는 것이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1. 중학교 학생들의 음악 저작권에 관한 지식 및 태도 수준은 어떠한가?
2. 학생들은 어떤 곡을 표절로 판단하는가?
 - 2-1. 학생들은 몇 마디의 가락을 표절로 판단하는가?
 - 2-2. 학생들은 같은 리듬의 곡을 표절로 판단하는가?
 - 2-3. 학생들은 같은 화성 진행의 곡을 표절로 판단하는가?

3.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경기도 부천시 소재 중학교 2학년 학생만을 대상으로 선정하였기 때문에 연구 결과를 모든 중학생으로 일반화하기에는 그 한계가 있다.

둘째, 저작권법에서 실질적 유사성을 판단하는 요인인 음악의 3요소 즉, 가락, 리듬, 화성에 대해서만 표절 인식조사를 실행하였기 때문에 음색, 셈여림, 빠르기 등 음악의 다른 요소 측면은 검토하지 않았다는 한계가 있다.

Ⅱ. 이론적 배경

1. 저작권법

1) 저작권과 저작물의 정의

저작권(著作權, copyright)은 저작자가 자신이 창작한 저작물에 대해 가지는 권리이다(정문성 외, 2022). 저작권법 제1장 제1조에 따라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저작권은 저작자의 권리인 저작권과 이에 인접하는 권리인 저작인접권을 보호하는 권리로서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으로 나뉜다. 저작재산권이란 저작자의 저작물에 대한 재산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이며 저작인격권이란 저작자가 자기의 저작물에 대해 가지는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이다(박성호, 2023). 윤태식(2021)은 저작권에 대해 넓은 의미로는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 외에도 저작인접권, 배타적 발행권, 출판권,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및 영상제작물에 대한 권리 등이 포함된다”(p. 37)라고 설명하였다. 오승중(2020)은 저작권에 대해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에 대하여 법이 그 창작자에게 일정 기간 동안 그 창작물을 독점적으로 사용케 하고 다른 사람이 무단으로 복제, 공연, 공중송신(전송, 방송, 디지털음성 송신 등), 전시, 배포, 대여 및 2차 저작물의 작성 등의 행위를 하거나 그 창작물에 대한 창작자의 인격권 침해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권리”(p. 9)라고 설명하였다. 즉, 저작권이란 인간의 생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인 저작물에 대하여 그 창작자인 저작자가 취득하는 권리를 의미

한다(오승중, 2020).

저작권법 제2조 1호에 따르면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 저작물의 성립요건은 일반적으로 첫째, 창작성이 있을 것 둘째,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것일 것 등 2가지를 들 수 있으며, 여기서 창작성은 “그 저작물이 기존의 다른 저작물을 베끼지 않았다는 것 또는 저작물의 창작이 개인적인 정신활동이라는 것을 의미한다(오승중, 2020, p. 47).” 표현 수단에 따라 저작물은 어문저작물, 음악저작물, 연극저작물, 미술저작물, 건축저작물, 사진저작물, 영상저작물, 도형 저작물,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이 있다. 이때 음악저작물은 국내 저작권법상 ‘음악저작물’로 명시가 되어 보호되고 있으나 정확한 정의나 그 범위에 관하여 설명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 문헌을 통해 음악저작물에 대한 정의가 이루어지고 있다(조진완 외, 2014).

2) 저작권 침해

저작권은 저작권법에 따라 저작물의 이용에 관한 배타적인 권리로 보호된다. 따라서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은 저작재산권 침해가 된다. 나아가 저작권자로부터 저작물 이용의 허락을 받은 자라 하더라도 그 허락된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를 벗어나면 저작권의 침해가 될 수 있다(오승중, 2020).

음악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첫째, 저작권 침해 주장자의 저작물이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받을만한 창작성이 있을 것 둘째, 무의식적인 이용을 포함하여 상대방이 저작권 침해 주장자의 저작물에 의거하여 이를 이용하였을 것 셋째, 저작권 침해 주장자의 저작물과 상대방의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을 것 등의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하병현, 윤용근, 2017). 이때 원고의 저작물에서 보호받는 요소를 가려낸 이후 그와 같은 보호를 받는 요소 중 피고가 무단으로 사용한 것이 있는지를 판단하는데, “우리나라 대법원 2004. 7. 8. 선고 2004다18736 판결에서도 음악저작물의 저작권 침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우선 보호받는 표현 부분을 가려내고 나서 실질적 유사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취지를 밝히고 있다(오승중, 2020, p. 1404).”

2. 표절

1) 표절의 정의

표절은 저작권법상 용어는 아니지만, 저작권의 침해행위라는 용어로 통칭하여 사용되는 말로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그 저작물을 복제, 공연, 공중송신(방송, 전송 등), 전시, 배포 등의 행위를 하는 것으로 공정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문화관광부, 2007, p. 8).” 또한 표절은 ‘타인의 저작물을 마치 자신의 저작물인 것처럼 공표한다’라는 요소가 첨가되어 있어 윤리적 비난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오승중, 2020).

음악저작물은 표절의 문제가 자주 제기되는 분야인데 그 주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표절에 의한 저작권 침해는 저작권법상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둘째, 음악을 창작할 때 사용되는 기본적 도구가 다른 저작물의 창작 도구보다 양적으로 훨씬 적고 새로운 음악을 창작해 내는 방법도 상대적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오승중, 2020). 셋째, 보호받을만한 창작성을 판단하는 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창작성의 구체적인 기준과 그 적용은 판례와 이론에 맡겨져 있기 때문이다. 넷째, 실질적 유사성 판단 시 법원은 음악저작물의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음악적 전문성이 없

는 실태이며 사건마다 참여하는 전문가가 고정되어있지 않기 때문이다(최혜경, 2022).

2) 실질적 유사성에 의한 표절 판단

음악저작물이란 소리를 통해 인간의 사상과 감정이 표현된 저작물로서(윤태식, 2021) 가락과 리듬, 화성의 3가지 요소가 종합적으로 구성되는 것이다. 따라서 표절 악곡을 판단할 때 가락, 리듬, 화성의 3가지 요소를 중심으로 실질적으로 유사한지에 대해 분석하게 되는데, 이때 각 요소의 보호 정도는 각기 다르다.

멜로디는 상대적으로 선택의 폭이 넓으므로 악곡의 창작성은 멜로디 부분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나게 되며 악곡의 3요소 중 가장 큰 보호를 받는 부분이다(오승중, 2020). 그에 반해 리듬은 매우 약한 정도의 보호만이 주어진다 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데, 그 이유는 멜로디보다 그 변화의 여지가 적을 뿐만 아니라 악곡의 형식이 무엇이나에 따라서 선택의 폭도 좁기 때문이다. 화음도 이와 마찬가지로 멜로디가 어떻게 구성되느냐에 따라서 선택의 폭이 좁으므로 이에 대한 저작권의 보호는 상대적으로 약하다(오승중, 2020). 그러나 이는 보호의 정도에 있어서 그렇다는 것일 뿐, 음악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침해 판단 문제에 있어서는 반드시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첫째, 음악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침해 여부는 두 작품 사이의 실질적 유사성 유무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이때 실질적 유사성은 멜로디에 의하여 많이 좌우되기는 하겠지만 궁극적으로 청중이 받는 전체적인 느낌에 따라 결정된다. 둘째, 음악을 듣는 일반 청중은 리듬과 멜로디, 화음을 각각 구분하여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어우러진 전체적인 분위기에 따라 감상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오승중, 2020).

표절에 의한 저작권 침해에 대해 실질적 유사성을 중심으로 연구한 정다희(2017)는 음악저작물의 실질적 유사성에 관한 음악인들의 논의 기초를 제공하고자 시대 흐름에 따른 표절 판단 주체와 갈등 해결 방법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첫째, 아이디어와 표현을 구분하는 기준이 분명하지 않아 표현만을 비교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 둘째, 관용구로 인정되어 창작성이 부인될 시 이는 최초 창작자의 노고를 인정하기 위해 저작권을 인정하는 저작권법의 취지와 맞지 않다는 점. 셋째, 유사 작품의 등장은 오히려 원저작물의 관심을 유도할 수 있어 대체재가 될 수 없다는 점과 같은 문제를 제기하며 음악인들에게 음악저작물의 실질적 유사성에 관한 논의의 기초를 제공하였다.

한편, 대중음악 수요자가 표절곡에 대해 유사성을 지각할 때 어떤 음악적 요소가 강하게 작동하는지를 알아보고자 한 김제현(2016)은 직접 곡을 창작하고 각 가락, 화성, 박자를 의도적으로 차용한 표절곡을 만들어 총 254명에게 비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표절곡 중 가락과 3개 요소의 결합형이 유사성 지각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박자와 화성은 상대적으로 그 영향이 적었다. 또한 설문자들의 사전 음악 지식은 유사성 지각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청중테스트에 의한 표절 판단

청중테스트는 실질적 유사성을 판단하는 방법 중 하나이다. 여기서 청중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지 않은 평균적이고 합리적인 관찰자를 의미한다. 청중테스트는 후행 작품이 원저작물을 위법하게 이용하였다는 판단을 뒷받침하기에 충분히 유사한지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검토한다고 해서 전체 접근 방법이라고도 하는데(윤태식, 2021), 청중테스트를 적용하여 실질적 유사성

을 판단할 때 분해식 접근방법보다 전체적 접근방법(totalities test)이 더 적절하다는 견해가 유력하다. 그 이유는 음악저작물과 같은 비어문적 저작물의 저작권 침해 판단 시 분해식 접근방법을 취한다면, 기술적인 전문용어를 활용하여 문자적으로 서술해 놓았을 때 인상적으로 느껴지는 부분이 일반 청중의 귀에는 전혀 그렇게 들리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체 접근방법에서는 실질적 유사성 여부를 판단하는 데 전문가 증언이나 상세한 분석을 활용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것보다는 통상의 관찰자가 두 대상물을 보고 들었을 때 느끼는 직관적인 인상을 중요시하여 대상물에 대한 ‘전체적인 관념과 느낌’을 고려함으로써 후행 작품이 원저작물을 위법하게 이용하였는지를 판단한다(윤태식, 2021). 오승중(2020)은 침해인정을 위한 마지막 분석 작업인 청중테스트에 대하여 일반 청중이 피고의 음악으로부터 원고의 음악과 동일 또는 유사한 기분을 느낄 정도로 ‘충분한’ 차용행위가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며, 단순히 유사성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침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다.

한편, Metzger(1985)는 음악은 아이디어를 전달하는 것이 아닌 청중들 사이에 어떤 인상이나 감상을 불러일으키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 접근방식이 부적절하다고 주장하며 대안적 접근방법으로서 ‘La Rue test’를 제안하였다(오승중, 2020, 재인용). 이 방법은 음악 작품을 분석하고 분해하되 개개의 음조로 분해하는 것이 아닌 작곡의 요소인 사운드, 화음, 멜로디, 그리고 리듬으로 구조적 분해를 하는 것이다. “Metzger는 다른 저작물에서의 청중테스트와는 달리 음악저작물에 있어서는 전문가들이 비교분석 자료를 제공할 수 있고, 배심원들에게 두 작품의 유사 여부를 청각적으로 분간하기 위한 도움을 줄 수도 있다고 하였다(오승중, 2020, p. 1407, 재인용).”

3. 저작권 교육

1) 교과 교육과정에 제시된 저작권 교육

제7차 중학교 교육과정을 보면 저작권에 대해 따로 기술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점차 사회와 학교 현장에서 저작권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어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서 정보 교과 등에 저작권 교육이 제시되었다. 저작권 교육에 대한 교사의 태도와 요구를 연구한 김덕정(2011)은 2007 및 2009 개정 교육과정과 교과서를 분석하여 저작권 교육이 시행될 방안을 탐색하고, 교사 177명을 대상으로 저작권에 관한 인식과 태도, 저작권 지식 등을 파악하여 교사들의 요구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교사의 99%가 학교 현장에서 저작권 교육이 필요하며 응답자의 50% 이상이 저작권 교육은 교과 시간에 수시로 이뤄지는 것이 적절하다고 답하였다. 한편, 청소년을 대상으로 저작권보호 의식과 교육유형에 관해 연구한 정승운(2011)은 일반계열 학생과 저작권 관련 업무에 종사할 전공자나 전공 희망자들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하였다. 그 결과 음악 전공 희망자들과 일반계열전공희망자들의 인식 수준은 거의 비슷하였다. 저작권 위반행위의 처벌에 대한 책임을 묻는 문항에는 ‘모름/무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이용자들의 올바른 인식 부족’ 및 ‘급격한 기술의 발달로 인한 것이므로 누구의 책임도 아니다’라는 답변이 높은 비중을 차지해 낮은 의식 수준을 보여 주었다. 그러나 음악 저작권 교육을 1회만 받았거나 받아본 경험이 없는 청소년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보아 저작권 보호에 대한 의식 수준이 낮은 이유는 교육의 부재라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저작권 교육의 필요성이 요구됨에 따라 다양한 교과목에서 저작권 교육이 제시되었는데, 음악 교과는 2009 개정 선택 교육과정 중 일반과목인 ‘음악과 생활’의 영역별 내용에서 제시된 것을 시작으로 2022 개정 교육과정

에서는 공통교과에서 저작권에 관하여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이 또한 성취기준에 저작권을 명시하여 관련 내용을 직접 제시하기보다는 성취기준 해설, 성취기준 적용 시 고려사항, 교수 학습 방법 및 평가 등과 같은 부분에서 간접적으로 관련 키워드를 포함하였다(이경민, 김자미, 이원규, 2023). 다음 <표 II-1>은 2022 개정 중학교 음악과 교육과정에 제시된 저작권 관련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표 II-1> 2022 개정 중학교 음악과 교육과정에 제시된 저작권 관련 내용

학년	내용 체계	범주	내용 요소
중1~3학년	창작	가치 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기 주도적인 태도 · 저작권, 책임감 인식
성취기준	[9음 03-04] 생활 속의 영역과 연계하여 음악을 만들고 활용하며 책임감을 갖는다.		
성취기준 해설	[9음 03-04] 이 성취기준은 생활 속의 다양한 영역 및 타 교과와 연계하여 음악 산출물을 주체적으로 만들고 활용하며 창작과 관련된 윤리 의식과 책임감을 기르도록 하기 위해 설정하였다. 실생활과 관련된 음악 영상이나 음악극 등 여러 형태의 음악을 창작하고 활용하며 다양한 분야를 경험하도록 한다. 또한 음악 창작에서 저작권 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인식하여 자신과 타인의 음악 산출물에 대한 책임감 있는 태도를 형성함으로써 서로의 음악을 존중하고 소통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둔다.		
성취기준 적용 시 고려사항	책임감 인식과 관련된 성취기준은 저작권 과 관련된 사례 조사하기, 저작권 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해 토의·토론하기, 생활 속 저작권 존중 실천 방안 발표하기, 음악 산출물 의도 설명하기, 타인의 음악 산출물에 대해 평가하기 등을 활용하여 평가할 수 있다.		

2) 음악 교과서에서의 저작권 교육

초등학교 음악 교과서의 경우 2015 개정 교육과정에 의한 초등학교 4학년 음악 교과서를 비교 분석한 남채원(2018)에 따르면 9종의 교과서 중 동아출판 교과서에서만 도덕 교과와의 활동 연계를 통해 음악 저작권 침해에 대해 다루고 있었다. 초등학교 음악 교과서에서는 음악 저작권에 대해 거의 다루지 않는 실정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박주만(2017)은 학교 현장에서 저작권 관련 교육이 활발히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며,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음악 저작권 교육 프로그램을 구안하여 총 5차시의 수업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학생들의 음악 저작권에 관한 기초지식 및 이해도 증진과 음악 저작권보호의 가치와 태도 향상에 효과적임을 입증하며, 학교 교육에서의 적극적인 음악 저작권 교육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중학교 음악 교과서의 경우 2015 개정 교육과정에 의한 중학교 1학년 음악 교과서를 생활화 영역 중심으로 분석한 김청화(2017)에 따르면 중학교 음악 교과서 14종 가운데 다락원과 성안당 외 12종 모두 음악과 산업에서 저작권의 의미와 저작권의 권리 보호에 관한 내용을 제시하였다. 세부적으로는 직업(저작권 관리원), 저작권 위반에 대한 예, 올바른 저작권 이용 방법에 대해 만화와 O, X 퀴즈를 활용하여 제시하였다.

고등학교 음악 교과서의 경우 2015 개정 교육과정에 의한 고등학교 음악 교과서를 생활화 영역 중심으로 분석한 고선하(2020)에 따르면 고등학교 음악 교과서 10종 가운데 (주)아침 나라, 와이비엠, 천재 교과서, 지학사, (주)금성출판사 위 5종에서만 ‘음악을 즐기는 태도’라는 내용 요소 안에 저작권보호, 저작권 침해 사례에 관한 내용을 제시하였다. 중학교 음악 교과서가 12종 중 10종에서 저작권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에 비해 적은 내용을 다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그 외의 저작권 교육

전국 초, 중,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의 저작권 인식 수준을 조사하여 저작권 교육의 방향성을 정립하고자 한 한국저작권위원회(2022)는 ‘저작권 체험 교실’, ‘찾아가는 저작권 교육’을 실시하고 청소년 저작권 교육의 가시적인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교육 전, 후를 조사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그 결과 교육 경험자가 미경험자보다 높은 저작권 지수를 보여 저작권 교육이 저작권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태도에 효과적임을 입증하였다. 그러나 태도 보다는 올바른 지식 증가에 단기적으로 효과가 크게 나타났기 때문에 장기적인 목적의 교육과 지속적인 교육이 필수적임을 나타냈다. 또한 어문, 음악, 연극, 미술 등 각 저작물 이용에 관련한 세부적인 의식 수준에 대해서는 조사가 미비한 실정이며, 디지털콘텐츠를 대상으로 유통되는 불법복제물에 대해서만 조사가 이뤄졌기 때문에 그 외의 저작권 침해 유형에 대해서도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

학생들의 음악 표절 인식 수준을 알아보기 위하여 음악과 음악 외 과목의 저작권 의식 및 교육과 음악 표절 사례 분석 및 표절 인식에 관한 선행연구를 고찰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저작권 교육에 관한 연구는 디지털 시대 다양한 저작권 문제가 폭증하고 윤리적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2009년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설립된 이후 2010년부터 꾸준히 조사한 것과 더불어 많은 교과에서 꾸준히 실행되어왔다. 그러나 대부분이 국어, 미술, 정보 교과에 초점이 맞춰져 연구되었고, 음악 교과에서 음악 저작권 교육 및 인식조사에 관한 연구와 실제 수업의 효과성을 입증한 연구의 대부분이 초등학생을 중심으로 그 대상이 한정되어 있었다.

둘째, 음악 표절에 관한 선행연구는 표절에 의한 저작권 침해가 저작권법

상 명시되어 있지 않고, 음악저작물의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명확한 항목이 없는 실정을 고려하여 실질적 유사성에 관한 논의의 기초를 제공하거나 표절 판단 기준을 알아보는 연구 및 표절에 의한 저작권 침해사례 분석 등을 중심으로 연구되어왔다. 그러나 음악의 수요자인 청중이 청중테스트를 통한 표절을 판단할 때 표절 악곡에 관련하여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대한 실증연구가 미비하였고 특히,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아직까지 진행된 바가 거의 없다.

따라서 본 연구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음악 저작권에 관한 인식과 표절 악곡을 판단하는 기준을 조사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현재 청소년들의 음악 저작권 문제에 관한 지식 및 태도 수준을 파악하고, 이들이 음악 콘텐츠를 소비하는 과정에서 표절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 연구는 음악 산업과 교육 분야에 있어 저작권 인식을 강화하고 표절 문제에 대해 더욱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Ⅲ.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의 연구 대상은 다음과 같다. 중학생의 음악 저작권에 관한 인식과 표절 악곡을 판단하는 기준을 조사하기 위해 부천시 소재 중학교에 재학 중인 2학년 8개 학급 학생들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남녀 분포는 남학생 107명, 여학생 87명으로 총 194명이 참여하였으나, 실제 연구는 불성실한 설문 22개를 제외하여 총 172부를 본 연구의 최종 자료로 사용하였다.

2. 연구 도구

본 연구에서 중학생의 음악 저작권 및 표절에 관한 인식을 조사하기 위해 사용한 연구 도구는 설문지이다. 중학교 학생들의 저작권 지식 및 태도 수준을 확인하기 위해 청소년 저작권 의식조사(한국저작권위원회, 2023), 음악치료사의 임상에서 음악저작물 이용실태(김효란, 2022), 표절곡에 대한 대중음악 수요자의 유사성 지각에 관한 실증연구(김제현, 2016)의 설문들을 음악 저작권 연구목적에 맞게 재구성하여 사용하였다.

설문지는 인구학적통계를 제외하고 총 2개의 주제로 분류하여 구성하였다. 첫 번째 영역은 음악 저작권 인식에 대한 20개의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문항은 음악 저작권 수업 경험 여부, 음악 저작권에 대한 지식 및 태도 정도를 파악하는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음악 저작권에 대한 지식을 물어보는 문항은 기본적인 저작권법에 관한 내용으로 음악 저작권 개념, 음악저작물

성립요건, 소셜미디어에서의 음악 저작권 침해, 불법 공유 및 복제, 음악저작물의 공정이용에 관한 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명목척도를 사용하여 ‘모르고 있었다’ 또는 ‘알고 있었다’로 답하도록 하였다. 음악 저작권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는 창작자 권리 존중, 저작권보호에 관한 관심 및 유익, 저작권 침해 시 법적책임, 음악저작물의 합법적 이용에 대한 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Likert 5점 척도를 사용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부터 ‘매우 그렇다’ 5점으로 답하도록 하였다.

두 번째 영역은 실질적 유사성 인식 정도를 파악하는 내용으로 13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교과서에 수록된 악곡을 음악의 3요소와 마디별로 표절을 달리하여 문제 악곡을 제작하였으며, 이를 학생들에게 유형별로 랜덤하게 들려준 뒤 표절 정도에 대하여 ‘맞다’ 또는 ‘아니다’ 또는 ‘잘 모르겠다’로 답하도록 하였다. 표절유형은 가락 표절유형, 화성 표절유형, 리듬 표절유형 등 음악의 3요소로 구분하여 제작하였다. 우리나라의 저작권법은 표절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표절 악곡이 원저작물에 의거하여 창작함으로써 실질적 유사성이 성립할 시 표절이 성립한다고 보기 때문에 본 연구에 사용된 악곡은 표절 악곡이라고 할 수 있다. 가락 표절유형은 원곡과 1마디가 같은 악곡 4문항, 2마디가 같은 악곡 4문항, 4마디가 같은 악곡 2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유형별로 곡을 다르게 구성하여 차별점을 두었다. 화성 표절유형의 경우 화성 진행은 같으나 가락을 다르게 구성하였고, 리듬 표절유형의 경우 원곡과 반주 리듬은 같으나 가락이 다른 유형과 원곡과 반주 리듬과 가락의 리듬은 같으나 가락의 음정이 다른 유형으로 구분하여 구성하였다. 설문지의 구성은 다음 <표 III-1>과 같다.

<표 III-1> 설문지의 구성

영역		내용	문항 수
인구통계학적 분류		성별	1
음악 저작권 인식	수업 경험 여부	음악 저작권 수업 경험 여부, 시기, 방법	3
	지식	표절 및 음악 저작권 침해 사례 여부, 음악 저작권 개념, 음악저작물 성립요건, 소셜미디어에서의 음악 저작권 침해, 불법 공유 및 복제, 음악저작물의 공정이용	10
	태도	창작자 권리 존중, 저작권보호에 관한 관심 및 유익, 저작권 침해 시 법적책임, 음악저작물의 합법적 이용	7
표절 인식		원곡과 가락이 1마디, 2마디, 4마디 같은 유형, 화성이 같은 유형, 리듬이 같은 유형	13

3. 연구 절차

본 연구는 2023년 3월부터 저작권 및 음악 표절에 대한 선행연구를 조사하였다.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하여 연구를 설계하며 연구목적과 연구 문제를 수립하였고, 검사 도구인 설문지를 구성 및 수정, 보완하였다. 그리고 2023년 7월 19일부터 2023년 7월 20일까지 이틀간 해당 학교를 방문하여 정규 음악 시간에 조사하였다. 세부적인 연구 절차의 내용 및 기간은 다음 <표 III-2>와 같다.

<표 III-2> 연구 절차의 내용 및 기간

연구 절차	연구 내용	연구 기간
준비	- 연구 주제 선정 - 선행연구 조사 및 문헌 고찰	2023.03 - 2023. 04
구성	- 이론적 배경 고찰 - 연구목적 및 연구 문제 수립 - 설문 제작 및 검토 - 연구 대상 선정 및 섭외	2023.03 - 2023.07
수행	- 학교 방문(설문지 배포 및 수집)	2023.07.19. - 2023.07.20
분석	- 수집 자료 분석 - 연구 결과 해석	2023.08 - 2023.09
정리	- 결과 해석에 따른 도출 - 최종 정리 및 완성	2023.09 - 2023.12

4.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 설문지를 통해 수집된 172부의 자료는 엑셀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자료 분석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설문 응답자에 대한 음악 저작권 인식에 대해 살펴보고자 음악 저작권 수업 경험 여부, 지식 및 태도 정도 등의 세부 내용으로 구분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설문 응답자들이 표절 악곡에 대한 실질적 유사성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판단하는지 살펴보고자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IV. 연구 결과

1. 음악 저작권 수업 경험 여부 조사 결과

부천시 소재의 중학교 2학년 8학급을 대상으로 음악 저작권 수업 경험 여부를 조사한 결과, ‘있다’라는 응답이 167명(97%)으로 나타났다. 그중 164명(80%)이 중학생 때 수업을 받았다고 응답했으며, 음악 교사를 통해 수업 시간에 음악 저작권 수업을 받았다고 응답한 학생은 162명(93%)으로 나타났다. 세부 내용은 다음 <표 IV-1, 2>와 같다.

<표 IV-1> 음악 저작권 수업 경험 여부

구분	응답 수	백분율(%)
유	167	97
무	5	3
합계	172	100

<표 IV-2> 음악 저작권 수업을 받은 시기 및 방법 (중복가능)

문항	구분	응답 수	백분율(%)
수업받은 시기	초등학생 때	31	15
	중학생 때	164	80
	그 외	3	1
	기억나지 않음	7	3
합계		205	100
수업 방법	수업 시간에 음악 교사를 통해	162	93
	외부기관 방문	2	1
	외부 강사의 교내 특강	8	5
	기타	3	2
합계		175	100

2. 음악 저작권에 관한 인식조사 결과

1) 음악 저작권에 관한 지식조사 결과

음악 표절과 음악 저작권 침해에 대하여 들어본 적이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 ‘있다’라는 응답한 학생의 빈도와 비율은 각각 165명(96%), 167명(97%)으로 나타났다. 세부 내용은 다음 <표 IV-3>과 같다.

<표 IV-3> 음악 표절 및 음악 저작권 침해 인지 여부

문항	구분	응답 수	백분율(%)
‘음악 표절’에 대하여 들어본 적이 있나요?	유	165	96
	무	7	4
‘음악 저작권 침해’에 대하여 들어본 적이 있나요?	유	167	97
	무	5	3
전체		172	100

한편,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음악 저작권에 대한 개념, 음악저작물 성립요건, 침해 예시, 불법 이용, 공정이용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조사한 결과,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학생들의 집중도와 흥미를 높이기 위해 사용한 음원이 수업과 관련이 없다면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가에 대한 문항에는 ‘모르고 있었다’라는 응답이 123명(72%)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악보나 음반 형태가 아닌 녹음이나 채보되지 않은 즉흥연주 등도 음악저작물로 성립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가에 대한 문항에는 ‘모르고 있었다’라는 응답이 88명(51%)으로 두 번째로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이하 나머지 6문항은 모두 과반수의 응답자가 ‘알고 있었다’를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교 학생들의 음악 저작권 지식조사에 대한 빈도분

석 결과는 다음 <표 IV-4>와 같다.

<표 IV-4> 음악 저작권 침해 경우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조사

문항	구분	응답 수	백분율(%)
새가 지저귀는 소리를 녹음하여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	알고 있었다	151	88
	모르고 있었다	21	12
악보나 음반 형태가 아닌 녹음이나 채보되지 않은 즉흥연주 등도 음악저작물로 성립할 수 있다.	알고 있었다	84	49
	모르고 있었다	88	51
게임, 드라마, 영화 등의 OST를 저작자의 허락 없이 방송(TV, 유튜브, 팟캐스트, 트위치 등)에 배경음악으로 사용하면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다.	알고 있었다	161	94
	모르고 있었다	11	6
SNS나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기존 가요를 편곡(리메이크 등)해서 부를 시, 기존 가요의 저작자인 작사가와 작곡가에게 허락을 받지 않으면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다.	알고 있었다	135	78
	모르고 있었다	37	22
파일 공유사이트에서 아이돌 콘서트 DVD(블루레이, 디지털 코드 등)를 돈을 내고 내려받았더라도 해당 아이돌, 제작회사의 허락 없는 파일이라면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다.	알고 있었다	127	74
	모르고 있었다	45	26
내가 좋아하는 아이돌의 앨범 CD 및 USB를 복제(복사)해서 나눠주는 것은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다.	알고 있었다	149	87
	모르고 있었다	23	13

학교 축제에서 틀어주는 대중가요는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	알고 있었다	149	87
	모르고 있었다	23	13
선생님이 수업 시간 학생들의 집중 도와 흥미를 높이기 위해 사용한 음 원은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다.	알고 있었다	49	28
	모르고 있었다	123	72
전체		172	100

2) 음악 저작권에 관한 태도 조사 결과

음악 창작자의 권리 존중과 저작권 침해 시 법적책임, 음악저작물의 합법적 이용과 저작권보호에 관한 관심 및 유익에 대한 학생들의 응답을 빈도 분석한 결과, ‘창작자의 권리(저작권)는 존중되어야 한다’라는 문항에는 ‘매우 그렇다’가 126명(73%), ‘그렇다’가 38명(22%)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전혀 그렇지 않다’와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한 학생은 0명(0%)으로 나타났다. 또한 ‘음악 저작권을 침해한 사람은 법적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문항에는 ‘매우 그렇다’가 94명(55%), ‘그렇다’가 50명(29%)으로 나타났다. 반면, ‘나는 불법 사이트를 이용하지 않는다.’라는 문항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가 1명(1%), ‘그렇지 않다’가 4명(2%), ‘보통이다’가 27명(16%)으로 나타났으며, ‘나는 음악, 악보 등의 저작물에 대해 정당한 값을 주고 이용한다.’라는 문항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가 4명(2%), ‘그렇지 않다’가 9명(5%) ‘보통이다’가 25명(15%)으로 나타났다. 중학교 학생들의 음악 저작권 태도 조사에 대한 빈도분석 결과는 다음 <표 IV-5>와 같다.

<표 IV-5> 음악 저작권에 대한 학생들의 태도 조사

문항	구분	응답 수	백분율(%)
창작자의 권리(저작권)는 존중되어야 한다.	전혀 그렇지 않다	0	0
	그렇지 않다	0	0
	보통이다	8	5
	그렇다	38	22
	매우 그렇다	126	73
나는 불법 사이트를 이용하지 않는다.	전혀 그렇지 않다	4	2
	그렇지 않다	10	6
	보통이다	20	12
	그렇다	32	19
	매우 그렇다	106	62
음악 저작권을 보호하는 것은 저작물을 만든 사람뿐만 아니라 이용하는 사람에게도 도움이 된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1
	그렇지 않다	4	2
	보통이다	27	16
	그렇다	72	42
	매우 그렇다	68	40
음원 및 악보 구매가 더 많은 창작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1
	그렇지 않다	11	6
	보통이다	35	20
	그렇다	50	35
	매우 그렇다	94	38
음악 저작권을 침해한 사람은 법적책임을 져야 한다.	전혀 그렇지 않다	0	0
	그렇지 않다	3	2
	보통이다	25	15
	그렇다	50	29
	매우 그렇다	94	55
나는 음악, 악보 등의 저작물에 대해 정당한 값을 주고 이용한다.	전혀 그렇지 않다	4	2
	그렇지 않다	9	5
	보통이다	25	15
	그렇다	48	28
	매우 그렇다	86	50
나는 음악 저작권 및 표절 논란과 관련된 신문 기사나 방송 등을 관심 있게 본다.	전혀 그렇지 않다	30	17
	그렇지 않다	35	20
	보통이다	51	30
	그렇다	30	17
	매우 그렇다	26	15
전체		172	100

3. 표절 인식조사 결과

1) 가락 표절유형

가락 표절유형은 한 마디가 같은 유형, 두 마디가 같은 유형, 네 마디가 같은 유형으로 구성하였으며 유형마다 첫 번째 마디를 포함하였을 때 표절로 인식하는 빈도와 비율이 높았다. 한편, 8마디 가락 중 한 마디를 표절한 악곡 유형에서는 ‘첫 번째 마디’가 같은 악곡의 ‘맞다’가 76명(44%)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섯 번째 마디’가 같은 악곡의 ‘맞다’가 31명(18%)으로 두 번째로 높았다. 반면, ‘세 번째 마디’가 같은 악곡의 ‘맞다’가 19명(11%)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세부 내용은 다음 <표 IV-6>과 같다.

<표 IV-6> 가락 1마디 표절유형

문항	구분	응답 수	백분율(%)	
다음 곡은 원곡을 표절한 악곡이다.	첫 번째 마디	맞다	76	44
		아니다	58	34
		잘 모르겠다	38	22
	세 번째 마디	맞다	19	11
		아니다	140	82
		잘 모르겠다	12	7
	다섯 번째 마디	맞다	31	18
		아니다	125	73
		잘 모르겠다	15	9
	일곱 번째 마디	맞다	23	13
		아니다	120	70
		잘 모르겠다	29	17
전체		172	100	

8마디 가락중 두 마디를 표절한 악곡 유형에서는 ‘1~2마디’가 같은 악곡의 ‘맞다’가 99명(58%)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3~4마디’가 같은 악곡의 ‘맞다’가 60명(35%)으로 두 번째로 높았다. 반면, ‘7~8마디’가 같은 악곡의 ‘맞다’가 20명(12%)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세부 내용은 다음 <표 IV-7>과 같다.

<표 IV-7> 가락 2마디 표절유형

문항	구분	응답 수	백분율(%)	
다음 곡은 원곡을 표절한 악곡이다.	1~2마디	맞다	99	58
		아니다	40	23
		잘 모르겠다	32	19
	3~4마디	맞다	60	35
		아니다	90	52
		잘 모르겠다	22	13
	5~6마디	맞다	40	23
		아니다	111	65
		잘 모르겠다	20	12
	7~8마디	맞다	20	12
		아니다	127	74
		잘 모르겠다	24	14
	전체	172	100	

8마디 가락 중 네 마디를 표절한 악곡 유형에서는 ‘1~4마디’가 같은 악곡의 ‘맞다’가 161명(94%)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5~8마디’가 같은 악곡의 ‘맞다’ 또한 124명(72%)으로 두 문항 모두 문제 악곡이 표절이라고 생각하는 응답이 과반수를 차지했다. 세부 내용은 다음 <표 IV-8>과 같다.

<표 IV-8> 가락 4마디 표절유형

문항	구분	응답 수	백분율(%)	
다음 곡은 원곡을 표절한 악곡이다.	1~4마디	맞다	161	94
		아니다	4	2
		잘 모르겠다	7	4
	5~8마디	맞다	124	72
		아니다	32	19
		잘 모르겠다	16	9
전체		172	100	

2) 화성 표절유형

화성 표절유형은 표절 악곡이 원곡과 화성 진행은 같으나 선율의 가락과 리듬이 다른 유형으로 문제 악곡이 표절이 아니라고 응답한 수가 101명(59%)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맞다’라고 응답한 수가 28명(16%)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세부 내용은 다음 <표 IV-9>와 같다.

<표 IV-9> 화성 표절유형

문항	구분	응답 수	백분율(%)
다음 곡은 원곡을 표절한 악곡이다.	맞다	28	16
	아니다	101	59
	잘 모르겠다	43	25
전체		172	100

3) 리듬 표절유형

리듬 표절유형은 첫째, 표절 악곡이 원곡과 반주 리듬은 같으나 선율의 음정과 리듬이 다른 유형 둘째, 원곡의 악곡과 반주 리듬 및 선율의 리듬은 같으나 선율의 음정이 다른 유형으로 문항을 나누어 설문하였다. 그 결과 두 항목 모두 문제 악곡이 표절이 아니라고 응답한 수가 각각 122명(71%), 80명(47%)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세부 내용은 다음 <표 IV-10>과 같다.

<표 IV-10> 리듬 표절유형

문항	구분	응답 수	백분율(%)
반주 리듬은 같으나 선율의 음정과 리듬이 다른 유형	맞다	26	15
	아니다	122	71
	잘 모르겠다	23	13
반주 리듬과 선율의 리듬은 같으나 선율의 음정이 다른 유형	맞다	63	37
	아니다	80	47
	잘 모르겠다	29	17
전체		172	100

V. 논의

본 연구의 목적은 중학생의 음악 저작권에 대한 인식과 표절 악곡을 판단하는 기준을 조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부천시 소재 중학교에 재학 중인 2학년 남학생 107명, 여학생 87명으로 총 19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중 불성실 응답 설문지 22개를 제외하여 총 172부를 본 연구의 최종 자료로 사용하였으며,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한 주요 논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중학교 음악 저작권 교육 실태

중학교 학생들의 음악 저작권에 대한 수업 경험 여부는 97%로 높게 나타났다. 음악 저작권 수업을 받은 시기는 초등학교 때(15%)보다 중학교 때(80%)가 그 비율이 높았다. 한편, 음악 저작권 수업 방법은 외부 강사의 교내 특강(5%)이나 외부기관을 방문하는 것(1%)보다 학교 정규 수업 시간에 교사를 통해 교육을 받은 비율이 93%로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올바른 저작권 인식을 위한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공교육 현장에서 저작권 수업이 잘 이뤄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김혜원(2022)의 연구에서 저작권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학생(62.9%) 중 47%만이 정규 수업 시간에 교육받은 것으로 나타난 결과보다 높은 비율이다. 다만 이러한 결과가 나온 이유로 김혜원의 2022년 연구와 본 2024년 연구 사이의 대략 2년 동안 저작권 교육이 활성화가 이뤄진 탓인지, 연구 대상이 다르기 때문인지, 특정 학교의 교육과정 차이 때문인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으므로 연구의 확대가 필요하다.

2. 중학교 학생들의 음악 저작권에 대한 인식

중학교 학생들은 음악 표절에 대해서는 96%가, 음악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는 97%가 들어본 적 있다고 답하였다. 또한 음악 저작권 개념, 음악저작물 성립요건, 소셜미디어에서의 음악 저작권 침해, 불법 공유 및 복제, 음악 저작물의 공정이용에 관해 물어본 음악 저작권 지식조사에서는 소셜미디어에서의 음악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 94%가 ‘알고 있었다’라고 답하며 높은 지식수준을 보였다. 반면, 음악저작물 성립요건 중 ‘새가 지저귀는 소리를 녹음하여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라는 문항에 대해서는 88%가 인지하고 있었으나 ‘악보나 음반 형태가 아닌 녹음이나 채보되지 않은 즉흥연주 등도 음악저작물로 성립할 수 있다.’라는 문항은 51%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는 학생들이 음악저작물 성립요건 중에서 수업 시간에 학생들이 즉흥으로 작곡한 악곡도 저작권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저작물로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음악저작물의 공정이용에 관한 부분에서 학생들은 ‘학교 축제에서 틀어주는 대중가요는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라는 것은 87%가 인지하고 있었으나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학생들의 집중도와 흥미를 높이기 위해 사용한 음원은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다.’라는 문항은 72%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는 저작권의 공정이용 중에서 학교 교육과정 내에서 이뤄지는 수업이라고 하더라도 공공의 목적을 위한 이용이 아니고 학습과 무관하게 단순한 흥미를 위한 사용은 저작권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부분을 저작권 침해로 인지하지 못하였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앞으로의 음악 저작권 교육에 있어서 다양한 부분들을 간과하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교육함이 중요할 것으로 사료 된다.

다음으로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의 음악 저작권에 대한 태도 정도를 조사해본 결과, 창작자의 권리가 존중되어야 한다고 응답한 학생은 95%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저작권을 침해한 사람은 처벌받아야 한다고 응답한 학생은 이보다 적은 84%로 나타났는데, 이는 불법 사이트를 이용한다고 응답한 학생이 20%, 저작물을 합법적으로 이용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학생이 22%로 나타난 것을 볼 때 일부 학생에게서 태도가 실천으로 이어지지 않는 모습이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가 나온 이유는 음원 및 악보 구매가 더 많은 창작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응답한 학생(27%)과 음악 저작권보호가 소비자에게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응답한 학생(19%)들을 생각해 볼 때 저작물을 구매하여 이용하는 것이 저작자의 창작 의욕을 장려하고 창작활동을 촉진하여 저작물 시장의 활성화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사료 된다.

따라서 학생들이 저작권 교육을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생활에서 저작권보호를 위한 행위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저작권과 관련하여 더욱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소양 및 태도를 기를 필요성이 있다. 나아가, 저작물의 보호가 궁극적으로 소비자에게 질적으로 더 높은 수준의 문화 콘텐츠들을 누리게 함과 동시에 문화 산업의 발달과 경제적 성장을 이루게 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할 수 있도록 저작권보호에 대한 인식개선이 이뤄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

3. 중학교 학생들의 음악 표절 인식 수준

중학교 학생들의 표절 여부 판단에는 같은 마디 수를 갖는다고 하더라도 어디에 위치하느냐에 따라 표절 인식 및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 먼저 학생들은 가락이 유사한 경우, 첫마디를 포함하였을 때 표절로 인식하는 빈도와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한 마디 가락 표절유형의 경우 ‘첫 번째 마디’ 44%, ‘5번째 마디’ 18%, ‘7번째 마디’ 13%, ‘3번째 마디’ 11% 순으로 표절이 ‘맞

다'라고 인식하였고, 두 마디 가락 표절유형의 경우 '1~2마디' 58%, '3~4마디' 35%, '5~6마디' 23%, '7~8마디' 12% 순으로 표절이 '맞다'라고 인식하였으며, 네 마디 가락 표절유형의 경우 '1~4마디' 94%, '5~8마디' 72%로 표절이 '맞다'라고 인식했다. 이는 한 마디 표절유형의 경우 4마디의 악구가 2번 반복되는 8마디의 곡에서 악구의 첫마디를 중요하게 인식하기 때문으로 보이며, 두 마디 표절유형의 경우와 네 마디 표절유형의 경우 첫 악절을 두 번째 악절보다 중요하게 인식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특히 네 마디 표절유형의 경우 같은 4마디임에도 불구하고 1~4마디가 표절이 '맞다'라고 응답한 비율과 5~8마디가 표절이 '맞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94%에서 72%로 떨어지는 것을 보아 같은 마디 수라 할지라도 어느 부분을 차용하고 어느 위치에 놓이느냐에 따라 표절 인식 및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화성과 리듬의 유사성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두 악곡이 유사하다 할지라도 이에 대한 학생들의 인지도는 낮았다. 화성 표절유형의 경우, 문제 악곡은 표절 악곡이 '아니다(59%)'라고 응답한 수가 '맞다(16%)'라고 응답한 학생보다 3.6배에 다다랐다. 리듬 표절유형도 마찬가지로 '선율의 음정과 리듬이 다른 유형'과 '선율의 음정만 다른 유형' 두 문항 모두 표절이 '아니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71%와 47%로 가장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김제현(2016)이 대중음악 수요자가 표절곡에 대해 유사성을 지각할 때 어떤 음악적 요소가 강하게 작동하는지 알아보고자 한 연구의 결과와 유사하다. 김제현의 연구에서는 표절곡 중 가락 표절 악곡이 유사성 지각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화성은 상대적으로 그 영향이 적었다. 본 연구 결과 또한 중학교 학생들이 가락에서 유사성을 인식하는 빈도 보다 리듬의 유사성을 인식하는 빈도가 현저히 낮게 나타났다.

또한, 가락의 경우 첫째 마디를 포함하는 경우에만 그 인식도가 높았는데, 이와 같은 결과는 과거 우리나라의 문화체육부 산하 공연윤리위원회에서 제

시한 음반사전심의 시 표절의 기준¹⁾과도 매우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법원은 1997년 10월 공연윤리위원회가 폐지된 뒤로 표절을 판단할 때 이와 같은 기준을 다시 사용하지 않고 있다. 이는 작곡가 관점에서 표절 판단 기준에 적용되지 않게끔만 작곡하면 표절 기준에서 벗어나게 되어 청중들이 인식하지 못하는 마디에 대해서는 표절 가능성의 여지를 주기 때문이라고 사료된다.

음악 표절 여부의 판단 기준에 대해 한국 법원은 청중의 판단이나 음악 전문가의 의견 중 어느 것을 우선해야 하는지에 대해 아직 명확한 입장을 내고 있지는 않다(문화관광부, 2007). 그러나, 한국 저작권 위원회는 청취자가 음악 청취의 유사성을 쉽게 인정하고, 이로부터 표절 판단을 내리는 경향이 있어 청중테스트가 음악저작물의 표절 판단에 있어 적합하지 않다고 제시한 바 있다(오승중, 2020, 재인용). 더불어 본 연구의 결과는 청중들이 악곡 간 유사성을 인식하는 것이 예상보다 어렵다는 점을 시사하며, 청중테스트의 신뢰성에 대한 재평가를 요구한다.

한편, 미국의 판례들은 음악 표절 여부를 일반 청중의 판단에 맡기는 경향을 보인다. 미국에서는 음악의 실질적 유사성을 일반 청중이 인지하는 경우 두 곡을 유사하다고 판단하며, 인지하지 못할 때는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판례는 전문가들의 세밀한 기술적 분석으로 두 곡 사이에 음악요소적 유사성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를 일반 청취자들이 전혀 인지하지 못한다면 이를 표절이라고 판단하여 저작권 침해의 책임을 묻는 것이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견해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1) 공연윤리위원회의 표절 결정 기준은 '주요 동기가 동일하거나 흡사할 경우' 즉 4/4박자는 첫 2소절, 3/4박자는 첫 4소절이 동일하거나, 박자 분할이 동일하고 하나 두음의 음정만 다를 경우 등을 창작곡의 표절 결정 기준으로 삼았다(권영준, 2007).

VI.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중학생의 음악 저작권에 관한 인식과 표절 악곡을 판단하는 기준을 조사하였다. 이를 위하여 부천시 소재 중학교에 재학 중인 2학년 남학생 107명, 여학생 87명으로 총 19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 중 불성실 응답 설문지 22개를 제외하여 총 172부를 본 연구의 최종 자료로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음악 저작권 수업은 학교 정규 수업 시간을 통해 잘 이뤄지고 있었다. 그러나 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음악 저작권에 관한 지식과 태도를 조사한 결과, 음악저작물 성립요건과 음악저작물의 공정이용에 관한 세부적인 지식이 상대적으로 부족했기 때문에 음악 저작권 교육에 있어서 다양한 부분들을 간과하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교육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학생들은 저작물의 보호가 궁극적으로 소비자인 자신들에게 이익됨을 인지하지 못하였다. 학생들은 저작물을 합법적으로 구매하는 것이 더 많은 창작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생각하였는데, 이는 저작물을 구매하여 이용하는 것이 저작자의 창작 의욕을 장려하고 창작활동을 촉진하여 저작물 시장 활성화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사료 된다. 따라서 저작물의 보호가 소비자에게 질적으로 더 높은 수준의 문화 콘텐츠를 누리게 한다는 것을 학생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저작권보호에 대한 인식개선이 필요하다.

셋째, 표절에 대한 명확한 기준 확립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은 악곡의 표절 여부를 판단할 때 같은 마디 수를 표절했다 하더라도 차용되는 부분과 위치하는 곳에 따라 표절 인식 및 판단을 다르게 하였다. 이는 청중테스트로 표절을 판단하는 것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는 음악 표절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법원은 때에 따라 그

진위를 판단하기 위해 청중테스트를 진행하는데, 청중테스트의 신뢰성에 대한 재평가를 요구하며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본 연구를 통한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학생이 아닌 다른 연령대는 음악 저작권과 표절 악곡 판단에 대해 어떻게 인지하는지 분석하고 비교할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는 대중음악에 국한하여 진행되었기 때문에, 클래식, 국악 등 다른 장르의 음악의 경우 어떻게 표절을 판단하고 인지하는지 분석하고 비교할 연구가 증가하길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 고선하 (2020).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고등학교 음악교과서 생활
화 영역 분석: 내용체계에 따른 내용요소를 중심으로. 석사학위
논문. 중앙대학교.
- 교육부 (2022). 교육부 고시 제2022-33호 별책12 음악과 교육과정. 서
울: 교육과학기술부.
- 권영준 (2007). 저작권 침해판단론. 파주: 박영사.
- 김덕정 (2011). 저작권 교육에 관한 교사의 태도와 요구 분석. 석사학
위 논문. 성균관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제현 (2016). 표절곡에 대한 대중음악 수요자의 유사성 지각에 관한
실증연구 가락, 화성, 템포 등의 음악요소를 중심으로. 석사학위
논문. 단국대학교 정책경영 대학원.
- 김청화 (2017). 2015 개정 교육과정에 의한 중학교 1학년 음악교과서
분석 생활화 영역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동아대학교 교육대
학원
- 김혜원 (2022). 저작권 기본 소양 함양을 위한 저작권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효란 (2022). 음악치료사의 입장에서 음악저작물 이용실태와 음악저
작권에 대한 인식 및 준수행동 조사.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
학교 음악치료대학원.
- 문화관광부 (2007. 12. 11). 영화 및 음악 분야 표절 방지 가이드라인.
서울: 문화관광부 저작권정책팀. <[https://www.mcst.go.kr/kor/mai
n.jsp](https://www.mcst.go.kr/kor/main.jsp)>에서 2023년 4월 19일 검색.
- 박정렬 (2023). 2023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 한국저작권보호원.

- 박주만 (2017). 초등학교 음악 저작권 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 역할놀이 수업모형을 중심으로. **예술교육연구**, 15(1), 35-50.
- 오승중 (2020). **저작권법(제5판)**. 파주: 박영사
- 윤태식 (2021). **저작권법(제2판)**. 파주: 박영사.
- 이경민, 김자미, 이원규 (2023). 2022 개정 교육과정 문서에 제시된 교과별 저작권 관련 내용 분석. **한국컴퓨터교육학회**, 27(2), 51-54.
- 정다희 (2017). **음악저작물의 표절에 의한 저작권 침해에 관한 연구 실질적 유사성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음악학부.
- 정문성, 김형진, 송성민, 김주현, 김민정 (2022). **청소년을 위한 알기 쉬운 저작권**, 한국저작권위원회.
- 정승운 (2011). **저작권 보호의식 분석과 교육유형에 관한 연구: 디지털 음악을 사용하는 청소년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예술대학원.
- 조진완, 신미해, 박아름, 김영철 (2014). 음악저작물 표절 기준에 관한 고찰 : 대중음악을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 14(3), 176-185.
- 최혜경(2022). **음악저작권 침해의 법적 문제 대중가요(K-pop)의 표절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 하병현, 윤용근 (2017). **음악과 저작권**. 서울: 북스데이.
- 한국저작권위원회 (2023. 3. 10). **2022년 청소년 저작권 의식조사**. 저작권 관계자료 2022-12. 서울: 한국저작권위원회. <<https://www.copyright.or.kr/main.do>>에서 2023년 3월 16일 검색.

ABSTRACT

Survey on Middle School Students' Awareness of Music Plagiarism

Yoo, Eun ju
Department of Education
Music Education Major
Graduate School of
Sungshin University

This study investigated middle school students' awareness of music copyright and criteria for judging plagiarized songs. To achieve this, a survey was conducted with a total of 194 participants, including 107 male students and 87 female students in the 2nd grade of a middle school in Bucheon. After excluding 22 incomplete responses, 172 responses were used as the final data for this study. The conclus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music copyright education was well conducted during regular school hours. However, when examining the knowledge and attitudes of middle school students regarding music copyright, it was found that they lacked detailed knowledge about the requirements for the creation of

music works and fair use of music works. Therefore, there is a need for systematic education on various aspects of music copyright to avoid overlooking crucial elements.

Second, students were not aware that the ultimate beneficiaries of protecting works are themselves as consumers. Students believed that legally purchasing works does not contribute significantly to fostering more creativity. This misconception indicates a lack of awareness that purchasing and using works legally can encourage the creator's motivation and stimulate creative activities, thus influencing the activation of the works market. Therefore, an improvement in awareness of copyright protection is necessary for students to recognize that it leads to a qualitatively higher level of cultural content for consumers.

Third, there is a need to establish clear criteria for plagiarism. Students who participated in this study showed variations in perception and judgment of plagiarism depending on the portion and location of the borrowed segment, even when the same number of measures were plagiarized. This highlights the limitations of relying on audience tests to judge plagiarism. Since Korea lacks clear regulations on music plagiarism, and courts sometimes use audience tests to determine the truth, a reevaluation of the reliability of audience tests and discussions on this matter are required.

부록 1

중학생의 음악 저작권에 대한 인식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본 설문조사는 “중학생의 음악 표절에 관한 인식조사”에 대하여 알아보기 위한 기초자료를 얻고자 만들어진 것입니다.

본 설문조사는 무기명으로 답하고 개인에 대한 사항은 절대 비밀이 보장되며, 응답한 내용에 대해서는 통계법 규정에 따라 연구목적 이외에 어떠한 용도로도 사용되지 않습니다.

본 설문지의 질문에는 답이 없으며 여러분께서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시는 답변에 표기해 주시면 됩니다.

설문에 기꺼이 응답해 주신 학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음악교육전공 유 은 주

1. 학생의 성별은?

- ① 남자 ② 여자

2. 음악 표절에 대하여 들어본 적이 있나요?

- ① 있다 ② 없다

3. 음악 저작권 침해에 대하여 들어본 적이 있나요?

- ① 있다 ② 없다

4. ‘음악 저작권’ 수업을 받은 경험이 있나요?

- ① 있다. (→5로 이동) ② 없다. (→7번으로 이동)

5. 음악 저작권 수업을 언제 받았나요? (중복선택 가능)

- ① 초등학교 때 ② 중학생 때 ③ 그 외 ④ 기억나지 않음.

6. 어떤 방식으로 ‘저작권’ 수업을 받았나요? (중복선택 가능)

- ① 수업 시간에 음악 교사를 통해 ② 외부기관 방문 ③ 외부 강사의 교내 특강
④ 방과 후 수업 ⑤ 기타 : _____

※ 다음 글을 읽고 음악 저작권에 대해 모르고 있었다면 ①, 알고 있었다면 ②를 체크해주세요.

번호	내용	모르고 있었다	알고 있었다
7	새가 지저귀는 소리를 녹음하여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	①	②
8	악보나 음반 형태가 아닌 녹음이나 채보*되지 않은 즉흥연주 등도 음악저작물로 성립할 수 있다.	①	②
9	게임, 드라마, 영화 등의 OST를 저작자의 허락 없이 방송(TV, 유튜브, 팟캐스트, 트위치 등)에 배경음악으로 사용하면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다.	①	②
10	SNS나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기존 가요를 편곡(리메이크 등)해서 부를 시, 기존 가요의 저작자인 작사가와 작곡가에게 허락을 받지 않으면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다.	①	②
11	파일 공유사이트에서 아이돌 콘서트 DVD(블루레이, 디지털 코드 등)를 돈을 내고 내려받았더라도 해당 아이돌, 제작회사의 허락 없는 파일이라면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다.	①	②
12	내가 좋아하는 아이들의 앨범 CD 및 USB를 복제(복사)해서 나눠주는 것은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다.	①	②
13	학교 축제에서 틀어주는 대중가요는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	①	②
14	선생님이 수업 시간 학생들의 집중도와 흥미를 높이기 위해 사용한 음원은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다.	①	②

*채보: 음원은 있으나 연주를 위한 악보가 없을 때 음악을 듣고 악보로 옮겨 적는 것.

※ 평소 본인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것에 체크 해주세요.

번호	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5	창작자의 권리(저작권)는 존중되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16	나는 불법 사이트를 이용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17	음악 저작권을 보호하는 것은 저작물을 만든 사람뿐만 아니라 이용하는 사람에게도 도움이 된다.	①	②	③	④	⑤
18	음원 및 악보 구매가 더 많은 창작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19	음악 저작권을 침해한 사람은 법적책임을 져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20	나는 음악, 악보 등의 저작물에 대해 정당한 값을 주고 이용한다.	①	②	③	④	⑤
21	나는 음악 저작권 및 표절 논란과 관련된 신문 기사나 방송 등을 관심 있게 본다.	①	②	③	④	⑤

부록 2

중학생의 음악 표절 인식에 대한 설문지

※ 다음 들려드릴 음원은 원곡과 표절곡입니다. 들려주는 각 문제의 원곡을 듣고 그 후에 제시되는 다음 음원의 표절 정도가 어떠한지에 대해 자기 생각을 응답해 주세요.

문제 1.

번호	내용	맞다	아니다	잘 모르겠다
1	다음 곡은 원곡을 표절한 악곡이다.	①	②	③
2	다음 곡은 원곡을 표절한 악곡이다.	①	②	③
3	다음 곡은 원곡을 표절한 악곡이다.	①	②	③
4	다음 곡은 원곡을 표절한 악곡이다.	①	②	③

문제 2.

번호	내용	맞다	아니다	잘 모르겠다
1	다음 곡은 원곡을 표절한 악곡이다.	①	②	③
2	다음 곡은 원곡을 표절한 악곡이다.	①	②	③
3	다음 곡은 원곡을 표절한 악곡이다.	①	②	③
4	다음 곡은 원곡을 표절한 악곡이다.	①	②	③

문제 3.

번호	내용	맞다	아니다	잘 모르겠다
1	다음 곡은 원곡을 표절한 악곡이다.	①	②	③
2	다음 곡은 원곡을 표절한 악곡이다.	①	②	③

문제 4.

번호	내용	맞다	아니다	잘 모르겠다
1	다음 곡은 원곡을 표절한 악곡이다.	①	②	③

문제5.

번호	내용	맞다	아니다	잘 모르겠다
1	다음 곡은 원곡을 표절한 악곡이다.	①	②	③
2	다음 곡은 원곡을 표절한 악곡이다.	①	②	③

부록 4

원곡 및 표절유형별 실험곡 악보

1. 가락

1) 1마디 같은 유형: 보물

- 원곡

Musical notation for the original melody of '보물' (Treasure). It consists of two staves in G major (one sharp) and 4/4 time. The melody is: G4 (quarter), A4 (quarter), B4 (quarter), C5 (quarter), B4-A4 (beamed eighth notes), G4 (quarter), F#4 (quarter), E4 (quarter), D4 (quarter), C4 (half).

- 가락 표절 1마디: 1마디

Musical notation for the plagiarized melody of '보물' (Treasure). It consists of two staves in G major (one sharp) and 4/4 time. The melody is: G4 (quarter), A4 (quarter), B4 (quarter), C5 (quarter), B4-A4 (beamed eighth notes), G4 (quarter), F#4 (quarter), E4 (quarter), D4 (quarter), C4 (half).

- 가락 표절 1마디: 3마디

Musical notation for the plagiarized melody of '보물' (Treasure) with 3-measure plagiarism. It consists of two staves in G major (one sharp) and 4/4 time. The melody is: G4 (quarter), A4 (quarter), B4 (quarter), C5 (quarter), B4-A4 (beamed eighth notes), G4 (quarter), F#4 (quarter), E4 (quarter), D4 (quarter), C4 (half).

- 가락 표절 1마디: 5마디

Musical notation for the plagiarized melody of '보물' (Treasure) with 5-measure plagiarism. It consists of two staves in G major (one sharp) and 4/4 time. The melody is: G4 (quarter), A4 (quarter), B4 (quarter), C5 (quarter), B4-A4 (beamed eighth notes), G4 (quarter), F#4 (quarter), E4 (quarter), D4 (quarter), C4 (half).

- 가락 표절 1마디: 7마디



2) 2마디 같은 유형: 언제나 몇 번이라도

- 원곡



- 가락 표절 2마디: 1-2마디



- 가락 표절 2마디: 3-4마디



- 가락 표절 2마디: 5-6마디



- 가락 표절 2마디: 7-8마디



3) 4마디 같은 유형: 붉은 노을

- 원곡



- 가락 표절 4마디: 1-4마디



- 가락 표절 4마디: 5-8마디

2. 화성

- 화성이 같은 유형: 지금 이 순간

- 화성이 같은 유형: 창작 악곡

3. 리듬

- 원곡: 여행을 떠나요

The image displays a musical score for the song "여행을 떠나요" (Travel, Go Away). It is divided into two systems. The first system includes parts for Electric Guitar, Electric Bass, and Drum Set. The second system includes parts for E. Gtr., E. Bass, and Dr. The score is written in a key signature of three sharps (F#, C#, G#) and a 4/4 time signature. Chord markers E, A, B7, and E are placed above the guitar staff. The guitar part features a melodic line with some bends and a rhythmic accompaniment. The bass part provides a steady eighth-note accompaniment. The drum set part features a consistent pattern of eighth notes on the snare and bass drum.

1) 반주 리듬은 같으나 선율의 음정과 리듬이 다른 유형

E A E
 Electric Guitar
 Electric Bass
 Drum Set

5 B⁷ E
 E. Gtr.
 E. Bass
 Dr.

2) 반주 리듬과 선율의 리듬은 같으나 선율의 음정이 다른 유형

The musical score is written for three instruments: Electric Guitar, Electric Bass, and Drum Set. It is in 4/4 time and has a key signature of three sharps (F#, C#, G#). The score is divided into two systems. The first system contains measures 1 through 4, and the second system starts at measure 5. The Electric Guitar part features a melodic line with some rests. The Electric Bass part provides a steady eighth-note accompaniment. The Drum Set part maintains a consistent rhythmic pattern throughout.